

최종 승인일	2025. 6. 20.
작성부서	경영기획팀

사외이사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Independence and Diversity of
Outside Directors Policy)

Rev.1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세아제강(이하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요 안건의 결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정책에 적용합니다.

제2조. 기본 원칙

가. 이사회 독립성 정책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며,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 외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의 겸직을 금지합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자 및 재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후보자 및 재임 이사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재임 사외이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3)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4) 회사와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5)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6)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마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라)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회사가 자본금(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마) 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상기 요건 외에도,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외이사의 다양성 정책

회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1) 성별: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한 성(性)별이 다른 후보자
- 2) 연령: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령대의 후보자
- 3) 기타: 국적, 인종, 종교 등의 항목을 고려함

제3조. 부칙

본 정책은 2024. 6. 28.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책은 2025. 6. 20.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